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시·도지사가 면허조건을 이행하는 자의 근무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근무실적보고)”를 “(근무실적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한”을 “보고한”으로, “보고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u>근무실적보고</u>) ① (생 략)	제6조(<u>근무실적보고 등</u>) ① (현행 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 실적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면허조건을 이행하는 자가 <u>제출</u> <u>한</u> 근무실적을 종합하여 이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매분 기 종료후 1월 이내에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u>보고하여야</u> 한다.	②----- ----- ----- <u>보고</u> <u>한</u> ----- ----- ----- <u>제출하여야</u> -----.